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수신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현장소장 귀하
(경유)

제목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컨설팅 신청 안내

1. 귀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노사간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의지가 결연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반기 자율안전 관리 컨설팅 추진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실시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참여 바랍니다.

가. 추진대상: 강남구 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참여업체 제한 요건 >

- ① 2025년도(발생일 기준)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 ② 2024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 ③ 2024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 * 다만, 대형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및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 기준 판단

나. 운영방법: 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 외부전문가(2인1조)가 컨설팅 실시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년)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다.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절차 및 일정



※ ①건설업 본사의 사업장 관리체계 및 지원대책, ②시공단계의 엔지니어링 계획(가설구조물 및 취역 시기 중간과정 본 구조물) ③공정관리, 공법선정(장비포함), 하도급 관리 항목 등 심사 강화

라. 컨설팅 참여 시 유의사항

- 자율안전관리 승인 현장은 승인 후 1년간 **정기감독·점검 유예**(사망사고 발생 제외)
- 승인 후 전반적 컨설팅 사업추진이 **부실한 경우 승인 취소**(중대재해 발생 포함)
- 필요 시 자체 예방점검 실시 후 **미비점 개선 지시**(지시불응에 따른 처분 별도)
-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현장은 공단 확인점검과 **연계하여 지도 실시**

마. 문의: po4n15@korea.kr(이메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근로감독관

김정현

과장

전결 2026. 8. 14.

원중경

협조자

시행 산재예방감독과-5162

(2026. 8. 14.)

접수

우 0616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1 14층 산재예방감독과

/ www.moel.go.kr

전화번호 02-3465-8493

팩스번호 02-6915-4315

/ po4n15@korea.kr

/ 비공개(6,7)